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2 선고 2015가단5061463 판결 [부동산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12. 11.

판결 선고 2016. 1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대 261㎡ 중 79분의 22.5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서울 영등포구 C 대 261㎡(면적단위 환산 전 79평, 이하 '이 사건 대지'라 한다)는 1954. 4. 2.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이 사건 대지 중 30/79지분에 관하여는 1954. 4. 2. D에게, 1959. 11. 3. E에게, 1980. 3. 21.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다. 이 사건 대지 중 49/79지분에 관하여는 1958. 10. 13. F에게, 1959. 11. 19. G에게, 1961. 8. 26. H에게, 1964. 9. 30. I에게, 1974. 4. 2. J에게, 1977. 4. 4.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라. 한편,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약 8㎡와 이에 연접한 도로 부지에 축조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3,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원인

가. 1954. 12. 31. F이 귀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 지분 중 26.5/79를, K가 22.5/79(이하 '이 사건 대지 지분'이라 한다)를 각 국가로부터 불하받았다. 1958. 10. 13. F은 귀속재산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, K는 사정이 어려워 2평분의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못 내게 되어 우선 F의 명의로 F과 K의 지분을 합한 79분의 49지분의 등기를 하게 되었고, 추후 K가 2평분의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낼 여력이 되면 이 사건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. K는 이 사건 대지 지분을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2평분의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지급하여 이를 실제로 점유하던 중 1975. 3. 20. 원고에게 700만원에 매도하여 원고가 이를 현재까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.

나. K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신민법이 시행된 후에도 K 및 그녀를 승계한 원고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나, 1997년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거듭된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그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바,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부당이득하고 있다 할 것이고, 따라서

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무엇보다도 갑 제2 내지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

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실(K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및 명의신탁, 원고의 매수)을 인정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(수십 년 동안 그러한 권리에 기한 재판상, 재판 외 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).

나.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(특히 최종매수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).

다.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김성대